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91
----------	-----

2021. 11. 23.(화)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임영은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1월 23일

-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영은 의원)

가. 제안사유

- 시민사회를 공익활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시민사회조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이를 통해 도내 사회문제 해결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6조 및 제7조)
-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안 제9조~제11조)
- 시민사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8조)
- 시민사회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2조)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 조례안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상호협력 및 공공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기존의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익활동 자체를 지원대상으로 국한하여 활동을 중심으로 장소제공, 행정지원, 협약체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사회 활성화를 포함한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 개정의 목적, 정의, 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에게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내용과 재정적 지원 사항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위원수 20명 이내 구성, 임기 2년(1회 연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정기회의(연2회),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치, 기능과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음.

○ 이 조례개정안은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의 지원 및 보장으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도민 등이 주체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민·관 협치의 전제 하에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과정이 이행되고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이유

-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존속 기간을 명시하고,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조항을 추가함.

○ 수정 주요내용

- 제4조제1항 중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방안을 마련”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3조”를 각각 “제11조”로 한다.
- 제11조를 삭제한다.
- 제12조 앞에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을 삭제하고 제11조 앞에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을 삽입한다.
- 제18조(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 제12조(중전의 제1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도록 노력해야”를 “아니하여야”로 한다.

- 제19조(적용)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9조 앞에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을 삭제하고 제20조 앞에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을 삽입한다.
-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충청북도 NGO센터’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변경한다.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조례안(수정안 포함) 및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도민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사회”란 도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민은 누구나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도지사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우선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과 추진 목표 및 추진과제
2. 시민사회 기초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조직의 설립·운영 지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홍보 및 공익활동 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지원방안
  6.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진단·평가
  8. 시·군 시민사회와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지원 체계 구축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실적을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8조(시장·군수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시군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등에게 시·군 기본계획 수립시 도의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제9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통계조사와 정책연구의 시행
2.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
3. 비영리단체 일자리 지원 및 구인·구직, 교육 등 정보 제공
4.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의 구축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 단체는 제외한다.

1. 시민사회에 대한 현황·통계 조사와 학술·정책 연구시행, 통합적인 자료·정보의 집적·공유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도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4.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국제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6.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도민 또는 단체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민사회 관련 전담부서 지정)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

제12조(시민사회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부·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도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
7. 시·군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조정과 정책협의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에서 공개모집하여 추천한 위원 2명

3.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도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사회 공익활동 촉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시민사회 영역 간 연계·협력 촉진)** 위원회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영역별 연계·협력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민사회조직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

**제19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와 권역별 시민사회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시민사회지원센터의 설립을 권고할 수 있고, 설립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2.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3.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상담·컨설팅
4.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보의 집적·제공
6. 사회통합, 갈등예방 및 해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포상)**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 법령

###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5조(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시·도지사에게 시·도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시·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시민사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충청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시민의 공익 활동 증대, 시민 사회 활성화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기관 명칭을 ‘충청북도 NGO센터’ 에서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로 변경

## 2. 비용 발생 요인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시민사회위원회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
-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안내판 등 교체, 기관 CI변경 및 홈페이지 정비

## 3. 관련조문

- 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안 제17조(운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원
- 안 제20조(센터의 설치)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 시민사회위원회 20명, 연 2회 정기회의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
-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안내판 등 교체, 기관 CI변경 및 홈페이지 정비 비용

### 나. 추계결과

#### ○ 산출과정

-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 1식\*50,000,000원 = 50,000천원
- 시민위원회 출석 수당 : 20명\*연2회\*130,000원 = 5,200천원
- 각종 간판 등 교체 : 1식\*20,000,000원 = 20,000천원
- CI 변경 및 홈페이지 재정비 : 1식\*20,000,000원 = 20,000천원

- 산출결과 : 2022년 95,200천원, 2023년부터 4년간 20,800천원 소요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세 출		95,200	5,200	5,200	5,200	5,200	116,000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0	-	-	-	-	50,000
	위원회 참석수당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각종 간판 등 교체	20,000	-	-	-	-	20,000
	홈페이지 재정비	20,000	-	-	-	-	20,000
재원 조달		95,200	5,200	5,200	5,200	5,200	116,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5,200	5,200	5,200	5,200	5,200	116,000
	지방세	95,200	5,200	5,200	5,200	5,200	116,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91
----------	--------

제안년월일: 2021. 11. 23.(화)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 1. 수정이유

-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조항을 추가함.

## 2. 수정의 주요내용

- 제4조제1항 중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방안을 마련”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으로 함.
-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3조”를 각각 “제11조”로 함.
- 제11조를 삭제함.
- 제12조 앞에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을 삭제하고 제11조 앞에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을 삽입함.
- 제18조(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함.
- 제12조(종전의 제1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도록 노력해야”를 “아니하여야”로 함.

-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19조(적용)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9조 앞에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을 삭제하고 제20조 앞에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을 삽입함.

-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충청북도NGO센터’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변경한다.

#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방안을 마련”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3조”를 각각 “제11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을 삭제하고 제11조 앞에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을 삽입한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도록 노력해야”를 “아니하여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적용)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앞에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을 삭제하고 제20조 앞에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충청북도NGO센터’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시  
민사회지원센터’로 변경한다.

##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안	수정안
<p>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도지사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우선과제로 <u>추진</u>해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촉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u>지원방안</u>을 마련해야 한다.</p> <p>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p> <p>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u>제13조</u>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공표해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실적을 <u>제13조</u>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p> <p><u>제11조(시민사회 관련 전담부서 지정)</u>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정책을</p>	<p>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 ----- <u>추진하기 위해 노력</u> -----.</p> <p>②----- ----- ----- <u>지원방안</u> 마 <u>련을 위해 노력</u>----- -----.</p> <p>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1조</u>----- -----.</p> <p>③----- ----- <u>11조</u>----- -----.</p> <p><u>&lt;삭 제&gt;</u></p>

시행하는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

<신 설>

제12조 (생 략)

제13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 략)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 3. (생 략)

④ ~ ⑦ (생 략)

제14조 ~ 제18조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

<신 설>

<삭 제>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아니하여야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 ~ 제17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18조(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9조(적용)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



제19조 ~ 제23조 (생략)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20조 ~ 제24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충청북도NGO센터’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변경한다.